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23093호, '11. 8.24시행) 및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380호)이 제정·시달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조정과

○ 실무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564명(변동없음)

나.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 1,236명 → 1,250명(+14명)

• 6급이하 : 1,148명 → 1,162명(+14명)

○ 기능직 : 265명(변동없음)

○ 별정직 : 27명 → 13명(△14명)

다. 정원책정기준 조정

○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5%이내	15%이내	21%이내	33%이내	26%이상
개정	5%이내	15%이내	21%이내	59%이상	

○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60%이내	40%이상		
개정		50%이내	50%이상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
-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 (행안부예규 제380호)

나.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9급의 증원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 및 보건위생감시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일반직으로 임용가능한 시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수가 미달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정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진료원 및 보건위생감시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해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7%이내	31%이내	25%이내	9%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율	5%이내	15%이내	21%이내	59%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율	3%이내	97%이상	9%이내	91%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50%이내	50%이상		

【별표 3】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64	1,56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50	1,250					
3급	1	1					
4급	10	5	1	1	1	2	
5급	77	27	3	4	4	12	27
6급이하계	1,162	1,162					
별정직 계	13	13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3	13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3				3		
지도사	30	30					
기능직 계	265	26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6.8, 2011.5.23>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22>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8.22>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 【행안부예규 제380호】

Ⅱ.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

1. 기본 원칙

-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은 자치단체의 인력수급 여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승진, 순환전보, 낙후지역(낙도·오지) 근무기피 등에 따른 진료공백 및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대책 등 마련

2. 전환직렬 및 직급

- 별정직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음
- 일반직 전환직급 기준
 - 별정 6급 상당 6년 이상 재직자 : 보건진료 6급
 - 별정 6급 상당 6년미만 ~ 별정7급 3년이상 재직자 : 보건진료 7급
 - 별정 7급 상당 3년 미만 : 보건진료 8급

3. 재직중인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임용

-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임용 (시험공고 실시)
 - ※ 시험공고시, 임용예정 직급기준 명시

4. 정원·직제에 관한 조례 및 규칙 개정

- 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렬에 해당하는 정원으로 대체하여 반영
 - 일반직전환을 위한 자치단체별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개정 시기는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 개정 조례 또는 규칙의 적용시기는 전환대상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임용 시험 합격자를 일반직으로 인사 발령하는 시기)으로 부칙에 별도규정